

'20년 1-2월 주요국 지재권 동향

《 주요 내용 》

I. 유럽 p.2-3

- EU집행위, 지재권 보호·집행 관련 협력대상국 지정·발표
 - ▶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러시아 등을 EU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큰 국가로 지정
- EPO, AI 발명자 지정 첫 출원사례 거절
 - ▶ 기계인 AI는 법인격이 없어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유·이전할 수 없다고 판단
- EUIPO DesignView 새버전 공개
 - ▶ 전략계획 2020의 일환으로, 인터페이스 개선, 검색 기능 강화, 세부 이용편의 서비스 제공 등
- 英 브렉시트 관련 향후 업무추진방침 발표
 - ▶ 전환기간까지 현행 시스템 유지 및 사용자 사전대비를 위한 권리별 조치 세부사항 안내

III. 일본 p.4-5

- 日 닛케이, 첨단 10개 분야 특허출원동향 조사 결과 발표
 - ▶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첨단분야 출원률 선두를 차지, 단 품질면에서 미국이 우세
- JPO, 아프리카 스타트업 지원 세미나·상담회 개최
 - ▶ WIPO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정부기관과 스타트업을 초청하여 IP 보호·집행 관련 세미나 등 추진
- 미츠비시케미컬 등 日 20개사, 잠자는 특허정보를 소재 개발에 활용
 - ▶ 화학업체의 소재 개발기간을 단축을 위한 특허데이터를 분석하는 AI시스템을 구축 예정
- JPO 특허청장 2020년도 신년소감 보고
 - ▶ 산업구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저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정책·서비스의 중요성 강조

IV. 중국 p.6-7

- 미·중 「1단계 경제무역합의」 제1장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
 - ▶ 중국에 침해 적용대상 확대, 입증책임 완화 등 IP인프라 개선 관련 의무부여
- CNIPA,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특허, 상표 등의 기한에 관한 공고 발표
 - ▶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정기한이 지체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권리 회복가능
- CNIPA, 전자특허증 발급 및 상표 이의결정문 공개 공고 발표
 - ▶ 전자특허청 발급 시행(3.3), 상표 이의결정문 온라인 공개(2.18)
- CNIPA, 2019년 지재권 주요통계 발표

V. 미국 p.8

- 美 상공회의소 2020 국제지식재산 지수(IP Index) 보고서 발표
 - ▶ 53개국 중 한국 13위 유지, 특허, 저작권, 상표, 디자인, 체계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 등

※ 동 자료는 주요국 전문, 공식 사이트, 관련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, 특허청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. 또한, 자세한 사항은 주요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바랍니다.

I. 유럽

□ EU집행위, 지재권 보호·집행 관련 협력대상국 지정·발표

- EU집행위 통상총국은 이해관계자*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재권 보호·집행과 관련한 우려가 높은 非 EU국가들을 협력대상국(Priority Countries)으로 선정하는 '2020년 제3국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'를 발표

* 권리자, 소비자단체, 산업별 협회, 대학, 각 국 EU대표부 및 EU회원국

- 동 보고서는 EU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3개 카테고리(Priority 1~3 국가)로 구분하며,
 - 중국은 EU의 각종 보고서상 EU로 유입되는 위조·불법 복제품 원산지 국가 중 가액과 수량이 모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보호·집행 관련 문제들의 규모와 지속성으로 인해 단독으로 "Priority 1국가"로 지정

구 분	해당 국가
Priority 1 (1개국)	중 국
Priority 2 (5개국)	인도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터키, 우크라이나
Priority 3 (8개국)	아르헨티나, 브라질, 에콰도르, 말레이시아, 나이지리아, 태국, 사우디

- 한편, 우리나라는 협력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, IP보호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

□ EPO, 인공지능(AI) 발명자 지정 첫 출원사례 거절

- EPO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(AI)을 발명자로 지정한 특허출원*에 대해 '19.12월 발명자 적격 요건 미비로 출원 각하결정

* 모양의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음식용기 및 위험한 상황에서 주의를 끌기 위한 깜박이는 빛 신호장치 관련 2건의 발명을 유럽, 미국 및 영국특허청에 출원

- 동 출원은 영국 Surrey 대학교 내 AI Inventor team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DABUS(AI)를 발명자로 지정하고 DABUS를 탄생시킨 Thaler 박사를 출원인으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

- 비공개 구술심리('19.11.15)를 통해 EPO는 특허출원인에 발명자로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승계하였는지 진술을 요청하여, 이에 출원인 Thaler 박사는 AI 소유자로서 AI가 보유한 권리의 승계자라고 주장하였으나,

- EPO는 기계는 법인격이 없어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,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 또는 승계를 통해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기 주장을 불수용

- 이번 사건은 SI가 발명에 관여 또는 완성했을 경우, 발명자 지위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 EPO의 첫 판단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

□ EUIPO, DesignView 서비스 개편

- * 디자인 대민검색시스템으로 2012년에 런칭하여, 15만 개의 디자인 데이터를 구축
- 유럽 지식재산청(EUIPO)은 전략계획 2020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DesignView의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설계하고 검색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며, 현재 운용 중인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베타버전으로 운용 중
 - 이번 서비스 개편에는 EU 내 IP사무소, 사용자 협회들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임
- 한편, DesignView 베타 사용자는 빠르고 효율적인 검색 도구와 외에도 또한 둘 이상의 디자인을 나란히 배치하여 비교하거나, 검색결과를 PDF, EXCEL, WORD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등 세부 서비스를 이용 가능

□ 英 브렉시트 관련 향후 업무추진방침 발표

- 영국지식재산청(UKIPO)은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전환기간인 '20년말까지 현행 IP시스템이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향후 업무추진방침을 발표(20.1.31.)
 - 동 방침은 IP시스템-생태계상의 사용자 및 권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영국정부가 전환기간 중에 준비 내지 조치할 세부사항들을 각 지재 권별로 상세히 수록
 - * (상세구성) ①총론, ②상표, ③등록디자인, ④미등록디자인, ⑤의약품특허추가보호증명(SPC).특허, ⑥권리소진/병행수입, ⑦저작권
- 아울러, 종전 발표대로 UKIPO은 전환기간 종료시점에 기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약 140만 건의 EU상표와 70만 건의 EU디자인을 영국 권리(21.1월부터 효력 발생)로서 전환할 예정
 - * 단 UKIPO의 조치로 취득한 영국권리의 잔여 존속기간 만료시까지만 보장되며, 이후의 갱신 비용의 경우 부담필요

II. 일본

□ 日 닛케이, 첨단 10개 분야 특허출원동향 조사 결과 발표

- 日 닛케이는 최근 20년간('00-'19) 첨단 10개 분야* 특허출원동향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AI, 재생의료 등 9개 분야에서 미·일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고 발표(2.12)
- * ①인공지능(AI), ②양자 컴퓨터, ③ 재생의료, ④자율주행·자동운전, ⑤블록체인, ⑥사이버 시큐리티, ⑦가상현실(VR), ⑧드론, ⑨도전성 고분자, ⑩리튬이온전지
- 10개 분야 특허출원 건 중 중국인이 출원한 것은 전체의 40%(약 13만건)을 차지하고 있으며,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만 미국이 중국을 앞서는 상황
- 한편 특허 품질측면에서 특허품질 상위 100개사 가운데 미국이 64개, 일본 18개, 한국 3개, 중국 1개 분야를 차지하여 미국이 우세
- 중국이 "지식재산 강국 설립"을 목표('15년 제13차 5개년 계획)로 50조8천억엔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여 첨단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됨



□ JPO, 아프리카 스타트업 지원 세미나·상담회 개최

- JPO는 아프리카 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, WIPO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정부기관과 스타트업을 초청하여 지원 세미나 및 개별 상담회를 개최(2.18-2.19, 도쿄)
- 세미나·개별 상담회는 IP 보호·집행 강화의 관점에서 JPO의 주요 정책과 스타트업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, 남아프리카, 케냐, 나이지리아, 이집트, 에티오피아, 튀니지, 모로코, 코트디부아르에서 참석

□ 미츠비시케미컬 등 日 20개사, 잠자는 특허정보를 소재 개발에 활용

- 미츠비시케미컬, 스미토모화학, 미츠이화학, 도레이 등 일본 화학업체 20개사는 일본 국내 특허정보를 활용해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시스템을 2021년부터 공동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발표
 - 시스템은 AI를 통해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있는 소재 자체 정보 외에 그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의 화학반응에서 얻을 수 있는 화합물 정보를 활용하여,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재를 개발하는 제조법을 도출하는 원리로,
 - 이로 인해 기존의 반복 실험 등을 통해 10년 정도 소요되던 개발기간이 몇 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
- 시스템은 日의 국립연구개발법인인 물질·재료 연구기구(NIMS)가 관리하고 참가업체들이 이를 유료로 활용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

□ JPO 특허청장 2020년도 신년소감 보고

- AI, IoT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혁명의 진행 및 플랫폼형 비즈니스의 대두 등 산업 구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저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청 정책과 서비스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

《주요 내용》

- √ (지식재산 보호) 무형을 중심으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로부터 보호 방법 모색
- √ (AI 등 신기술분야 심사) 일본 리드하 각국 AI, IoT 발명의 권리화 논의를 촉진
- √ (글로벌 네트워크 확대) PPH(특허심사 하이웨이)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
- √ (의장제도 개정)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제도 개선을 포함한 개정 의장법을 올 4월부터 시행
- √ (심사처리)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품질을 유지하며, 증가하는 상표 출원건수에 대응하여 상표심사 처리를 촉진할 예정
- √ (지적재산 전략 디자이너) 미활용 발명을 발굴·활용을 위해 지적재산 전략 디자이너 대학,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파견 지속

III. 중국

□ 미-중 「1단계 경제무역합의」 제1장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

- 미-중은 1단계 경제무역합의*에 서명하였으며('20.1.15), 합의내용에는 무역 분쟁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지식재산권을 첫 번째 챕터로 포함
 - * 중국은 수입 및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, 미국은 관세 일부 보류
- 지식재산 챕터의 각 조항에는 일반적 의무규정, 중국의 구체적 의무 규정, 미국 제도에는 문제가 없음을 기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중국의 구체적 의무는 아래와 같음
 - (영업비밀 보호 강화) 침해 책임 주체·침해 유형 등 적용대상 확대,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일부 전환한 입증부담 완화, 필수적인 정보만 제출을 요구하는 영업비밀 보호 등
 - (위조상품 및 저작권 침해품 유통 방지) 효과적인 '통지-삭제(notice & takedown)' 체계 구축 및 반복적 위조상품 판매 플랫폼 사업면허 취소 방안 마련, 단속 정보의 정기적 온라인 공개 등
 - (기타) 기술이전 요구 또는 압력을 가하는 행위 금지, 심사·허가 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 기간 연장 제도 도입,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, 과도한 지리적 표시 보호 방지, 사법 절차 개선 등

□ CNIPA,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특허, 상표 등의 기한에 관한 공고 발표

-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(CNIPA)은 「점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는 특허, 상표, 반도체 배치설계 관련 기한 사항에 관한 공고」를 발표·시행하여('20.1.28),
 -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, 반도체 배치설계 등과 관련된 기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으로 지체된 경우 권리회복이 가능하도록 규정

《 공고 주요내용 발췌 》

당사자가 전염병 상황과 관련된 이유로 인해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에 규정된 기한 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, 그 권리의 상실이 초래된 경우, 특허법 실시세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당사자는 장애가 제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, 늦어도 기한이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,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. 권리회복을 청구하는 경우, 권리회복 청구비는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, 권리회복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,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, 구체적인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하고, 동시에 권리상실 전에 처리했어야 할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.

- √ (특허법 실시세칙) 제6조 ①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, 장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늦어도 기한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.

□ CNIPA, 전자특허증 발급 및 상표 이의결정문 공개 공고 발표

- 중국 국가지식산업국(CNIPA)은 2020.3.3. 이후로 등록공고되는 전자출원특허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전자특허증을 발급하고 종이 특허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공고(1.23)
 - 다만, 필요에 따라 중국 전자출원사이트를 통해서는 종이 특허증의 발급 신청이 가능
- 또한, CNIPA의 상표국은 상표 이의심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감독을 강화하며, 법에 의한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표 이의결정문을 온라인으로 공개키로 공고(2.18)
 - 상표 이의결정문은 우편으로 송부한 날로부터 20 업무일 이내에 중국 상표 사이트에 공개되나, 당사자의 영업비밀, 개인정보 등과 같은 경우는 제외됨

□ CNIPA, 2019년 지재권 주요통계

- CNIPA에 따르면, 2019년 중국은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9.1%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5년 연속 백만 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고 있으며, 상표는 전년대비 6.3% 증가하여 전세계출원률 1위를 유지 중

《 주요 통계(단위 : 만 건) 》

구 분	특허 출원	특허 등록	PCT 국제출원	상표 출원	상표 등록
2019	140.1	45.3	6.1	783.7	640.6
2018	154.2	43.2	5.5	737.1	500.7
증가율(%)	-9.1	4.9	10.4	6.3	27.9

- (특허 등록 상위 10개 중국기업) 화웨이, 중국석유화학, 광둥OPPO이동통신, 징둥, 텅신 심천, 혜주끼리, 리엔샹북경, 중싱통신, VIVO이동통신, 중국석유천연가스
- 한편, 중국은 2019년 주요 통계의 특징을 지재권 원천 보호 능력 증대, 지재권 정책의 시장수요 부합, 지재권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지원한 것으로 자체 평가

IV. 미국

□ 美 상공회의소 2020 국제지식재산 지수(IP Index) 보고서 발표

* '12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지재권 환경을 비교·분석하여 이를 수치화한 국제 IP지수를 발표

○ 미 상공회의소의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(GIPC)는 53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 국가별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하는 지식재산 지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

- (평가 방법) 특허권, 저작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영업비밀, 지식재산 사업화, 지식재산 집행, 체계적 효율성, 지식재산 국제조약 가입 9개 분야에 대하 50개의 지표로 평가
-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은 47.64점(미국), 최저점은 7.11점(베네수엘라)이며, 우리나라는 41.10점(13위)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5.04점 상승(순위 전년동)

* (Top10)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스웨덴, 일본, 네덜란드, 아일랜드, 스위스, 스페인

○ (우리나라) 특허권(2위), 저작권(6위), 상표권(3위) 및 디자인권(8위) 분야에서 높은 점수로 획득하였으며, 부경법 개정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강화 및 지식재산의 경제적 영향 연구 등으로 체계적 효율성(1위)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

《 우리나라 평가(분야별 점수, 점수 비교) 》

